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-31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의하여
‘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’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
고합니다.

2026년 4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‘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’ 시험적 실시

1. 개요

소형물품 발송 증가 대응 및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해 소형우편물
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우편요금 부담 경감과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자
‘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’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

2. 서비스 내용

가. 명칭: 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

나. 서비스 개요: 우편서비스의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우편함을
통한 소형포장물 투함·수거 및 배달서비스를 도입

- 대상 고객 : 개인고객(우편함 수거·배달) 및 다량고객(방문픽업·배달)
- 송달 속도 : 개인고객은 D+1과 D+3일 이용 가능, 다량고객은 D+1
- 서비스 특징 : 우편함 수거 및 배달(토~일, 공휴일 등 수거·배달 불가)

< 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 개요 >

구 분	개인 고객		다량 고객
	D+3	D+1	D+1
송달 기일	접수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	접수일 다음날부터 1일 이내	
접수 채널	우편함 수거	좌동	방문 수집
종적 조회	접수와 배달 제공	접수~배달 전과정 제공	좌동
배달 방법	우편함 배송을 기준으로 하되, 곤란한 경우(우편함이 없는 경우 등) 문전 배송도 가능		

※ D일 수거 기준: 전일 또는 당일 7시까지 사전접수하여 우편함에 투함이 완료된 우편물

다. 대상 우편물: 통상우편물 중 소형포장우편물

※ 우편법 제1조의2(정의) 2항 : 통상우편물이란 서신 등 의사전달물, 통화(송금 통지서를 포함한다)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.

라. 우편물 규격: 용적 45cm 이하, 무게 500g 이하

※ 규격에 맞으면 모든 포장용기(폴리 가능) 사용 가능(단, 우편함 투입구를 고려하여 높이는 3cm 이내)

마. 우편요금: D+3 1,800원, D+1 2,400원

※ 다량 우편물 발송 고객(방문접수) 대상 서비스는 월 물량단계별 요금 등 별도 적용

바. 이용 조건

1) 접수방법

- 개인 고객: 인터넷우체국 웹·앱에서 '간편 사전접수(가결제)' 후 사전 접수번호(16자리) 및 핸드폰 끝자리(4자리)등을 우편물 표면에 작성하여 우편함에 투함하면 집배원이 수거 후 우편 창구에서 접수 처리
※ 접수 시점: 집배원이 수거하여 우체국에서 접수 처리 시(가결제→결제승인)

- 다량 고객: 우체국 등 방문 수집 및 접수

< 우편함서비스 업무 흐름 >

발송인	우체국	수취인
① 인터넷 간편사전접수(결제정보 필수입력) ※ 접수처 '우편함' 선택	③ 집배원 수거 및 우체국(우편창구) 인계	⑤ 집배원 수취인 우편함 또는 주소지 문전 배송 ※ 우편함이 없을 시 주소지 배달
② '우편함'에 투함 ※ 다량고객 방문 접수	④ 우체국(우편 창구) 접수처리	⑥ 수취인 우편함 또는 주소지 문전에서 우편물 수령

2) 배달지역 : 전국(국내), 단 송달곤란지역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용

- 우편함 투함을 기준으로 하되, 곤란한 경우(우편함이 없는 경우 등) 집 앞 배달도 가능

- 3) 손해배상: 우편물의 수거에서 배달 전(前)단계까지 분실, 파손의 경우 각 서비스별 배상한도 내에서 손해배상

구 분	개인 고객		다량 고객
	D+3	D+1	D+1
배상액 한도	3만 원	10만 원	10만원

※ 집배원 등이 우편함 수거 이전 분실된 우편물, 접수 제한 물품과 서신, 통화 등 접수 불가 내용품 등은 손해배상 불가

- 4) 기타: 전송, 반송, 반환,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은 현 준등기 서비스 등을 준용

사. 시행일자

- o 「소형포장우편물 준등기 우편함서비스」 시행 : 2026.4.1.(수)~ 공고 폐기 시까지

※ 다만, 개인고객 준등기 우편함서비스(D+1, D+3)는 시행시기 별도 안내(5월 예정)

부 칙

이 공고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